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	-----

제안연월일 : 2014. 11. 26.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가. 민선 6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예정)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며,
- 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제한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법률이 아닌 조례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37조제3항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변인, 감사관,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제외), 민원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관리국 및 관련 사업소로 함.(안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 1) 소통기획관·기획관리실·안전행정국의 명칭을, 각각 민원소통담당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함.
 - 2) 기획조정실에 예산·재정관리·세정·회계·재산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재정기획관”을 신설함.
 - 3) 경제부시장 체제에 투자유치와 국제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투자유치단”을 신설하고 다만, 투자유치 사무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함
 - 4) 교육기획관(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조정실 사무로 조정함.
 - 5) 토지 및 지적관리 사무를 행정관리국 사무로 조정함.
- ※ 신설과 : 재정관리담당관, 인사과, 구조구급과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로 함.(안 제26조제2항제3호가목)

- 1)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사무를 삭제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 사무를 문화관광체육국 사무로 신설함.
- 2) 경제수도추진본부(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마이스산업 육성 사무를 문화관광체육국 사무로 조정함.

※ 신설과 : 대회정산단, 마이스산업과, 건강증진과

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투자유치단(국제협력 사무 제외),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로 함.(안 제26조제2항제4호가목)

- 1) 경제수도추진본부 명칭을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함.

※ 마이스산업 육성 사무를 신설된 마이스산업과(문화복지위원회 소관)로 조정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및 관련 사업소로 함.(안 제26조제2항제5호가목)

- 1) 도시계획국 명칭을 도시관리국으로, 항만공항해양국 명칭을 해양항공국으로 변경함.
- 2) 도시디자인추진단 사무를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사무로 조정함.
- 3) 항만공항해양국에서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관련 사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하고, 건설교통국에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무를 신설함.

※ 토지 및 지적관리 사무를 행정관리국(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정

※ 신설과 : 교통정보센터

마.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7조제3항)

- 1)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금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되고 있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이 금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되고 있음.
- 2)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행위의 금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함.
- 3) 따라서, 법률이 아닌 조례로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의무(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를 이행하고, 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5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별첨(7쪽)

다.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을 “대변인, 감사관,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다), 민원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가목 중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를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가목 중 같은 조 같은 항제4호가목 중 “경제수도추진본부”를 “투자유치단(국제협력 사무를 제외한다)”,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가목 중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을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② (생략)</p> <p>1. 의회운영위원회 가.~다. (생략)</p> <p>2. 기획행정위원회 가. <u>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u>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바. (생략)</p> <p>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u>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u>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차. (생략)</p> <p>4. 산업경제위원회 가. <u>경제수도추진본부</u>,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타. (생략)</p>	<p>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② (현행과 같음)</p> <p>1. 의회운영위원회 가.~다. (현행과 같음)</p> <p>2. 기획행정위원회 가. <u>대변인, 감사관,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다), 민원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관리국</u>----- ----- 나.~바. (현행과 같음)</p> <p>3. 문화복지위원회 가. ----- <u>문화관광체육국</u> ----- ----- -----</p> <p>나.~차. (현행과 같음)</p> <p>4. 산업경제위원회 가. <u>투자유치단(국제협력 사무를 제외한다), 경제산업국</u> --- ----- -----</p> <p>나.~타.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5. 건설교통위원회</p> <p>가. <u>도시디자인추진단</u>, 건설교통국, <u>도시계획국</u>, <u>항만공항해양국</u>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p> <p>나.~마. (생략)</p> <p>6. 교육위원회</p> <p>가. (생략)</p> <p>제27조(상임위원회의 위원)</p> <p>①~② (생략)</p> <p>③ <u>의원은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p>	<p>5. 건설교통위원회</p> <p>가. <u>도시관리국</u>, 건설교통국, <u>해양항공국</u> ----- ----- -----</p> <p>나.~마. (현행과 같음)</p> <p>6. 교육위원회</p> <p>가. (현행과 같음)</p> <p>제27조(상임위원회의 위원)</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삭제></u></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검직 등 금지)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제58조(위원회의 권한) ○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사항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생략)

1. ~ 15. (생략)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 21. (생략)

② ~ ⑪ (생략)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